

2016회계연도 SH공사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38
----------	-----

2015. 12. 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15. 10. 30일 서울특별시상 제출 (2015. 11. 4일 회부)

2. 제안이유

- 가. 최악의 전·월세난에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관협력방식의 다양한 저렴주택의 공급을 지속 추진중에 있음
- 나. 이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SH공사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자 개요

- 대상기관 : SH공사
- 관련법령
 - 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 민선6기 6만호 공급 달성 및 주택재고의 10%까지 지속 공급
 -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 출자의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SH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및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편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기관인 SH공사에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5년 12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가 개정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6 회계연도부터 출자¹⁾·출연예산 편성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개정사유로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법개정 및 절차강화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예산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나, 본 동의안의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예산안 의결 전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
 - 이때 지방의회에서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여부를 사전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참고로 SH공사 납입자본금은 공사창설 시부터 현재까지 총 5조 2,574억원이며, 이중 현금출자는 3조4,965억원, 현물출자는 1조 7,609억원이고, 2016년 출자금은 1,843억으로 집계됨.

(단위 :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238	2,528	4,496	3,003	2,031	1,843	15,139

※ 2015. 10월말 기준이며 2016년 출자금은 기 시행중인 사업의 출자예정액임

1) 출자란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공공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함. 출자는 출자의 주체가 출자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SH공사는 1989년 2월 1일 도시개발공사로 최초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을 전담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급한 임대주택은 17만2천호로 서울시 전체 주택재고의 5% 수준임. 향후에도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저렴주택의 공급 확대와 안정된 주거복지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음.
- 종합하면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SH공사에 대한 2016년 회계연도 출자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출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